

춘천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30412 판결 [사해행위 등 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천혜진

피 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연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11. 21. 무렵 체결된 증여계약을 109,427,5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27,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원고는 2018. 3. 2. C으로부터 춘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18. 4. 5.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직원 F은 2019. 6.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2019. 11. 14. C 또는 그 딸로부터 이틀 동안만 다른 곳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충북 영동군 G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C은 2019. 11. 15.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 한다)과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17,600,000원, 채무자 C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주었다.

C은 2019. 11. 18. H조합으로부터 대출금 97,894,2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돈 중 5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97,860,000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20. 10. 2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5,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H조합은 2021. 5. 1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로 참가하여 40,572,431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2019.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1억 3,4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19. 11. 21. 무렵 이 사건 아파트와 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그 재산 대부분인 이 사건 대출금 등을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배당금 40,572,431원을 공제한 109,427,5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09,427,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20. 10. 28. 이미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측이 2021. 1. 11. 원고의 직원에게 C의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어 곧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질 것 같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적어도 2021. 1. 11.경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2020.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5,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600,000원으로 된 H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2019.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1억 3,4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의 딸 B이 2021.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직원에게 전화하여 ‘서류가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카드나 이런 게, 지금 근저당 때 보면 다른 데서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에서 세 군데서 제가 법원에서 서류 받은 거를 동생한테 전달받았거든요’, ‘엄마 재산이라고 있는 게 아파트 밖에 없어서 … 경매가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21. 1. 11.에는 피보전채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사해행위인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과 C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안석